

마포구 성산동 635~649번지 일대, 행정구역 경계변경(서교동으로)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

2015. 10. 26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청 원 인 : 이미선 외 241명
- 나. 소개의원 : 유호렬, 한일용 의원
- 다. 접수일자 : 2015년 10월 8일
- 나.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19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9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15년 10월 26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청원요지

마포구 성산동 635~649번지(약 80여 필지) 일대는 100여 세대 3,0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나, 2개의 행정동이 혼재되어 있어 행정상의 불편함, 쓰레기 수거 시기 상이에 따른 위생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, 동일 지역 내 다른 학군 등 지역 주민의 화합과 단합이 저해 되는바, 상기 지역의 행정구역을 서교동으로 변경해 줄 것을 청원함

3. 청원 소개의원 요지(소개의원 : 유호렬, 한일용 의원)

- 가. 성산동 635~649번지 일대, 행정구역 경계변경(서교동으로)에 관한 청원은
- 나. 하나의 블록 안에 행정구역이 달라서(성산동, 서교동), 행정력의 낭비가 심하고, 민간경제력 손실이 크고
- 다. 소방서,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도 관할구역 관리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,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이 늦어 질 수도 있으며,

- 라. 동일 지역내 다른 학군으로 혼란과 불편이 상존하고 있고, 택배 및 우편물 배달 등에서도 혼란과 민간력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
- 마. 동일한 골목안에 쓰레기 봉투 및 쓰레기 수거업체가 달라서, 동시에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항상 지저분하여, 위생상, 청결상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고,
- 바. 특히, 같은 골목안의 행정구역이 다름으로 인하여, 주민의 화합과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, 갈등요인이 내재하고 있는바, 행정구역 경계를 조속히 변경하여, 주민의 화합과 행정력·민간경제의 낭비를 줄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,
- 사. 본 청원은 타당성이 있는바, 동지역의 행정구역 경계는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5. 검토보고 (전문위원 김은모)

- 본 청원은 마포구 월드컵로20길 31-7 이미션 외 241명이 성산동 635~649번지 일대, 행정구역 경계변경(서교동으로)에 관한 청원을 2015. 9. 17. 우리 구의회에 접수하여 2015.9.18.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이송한 결과 2015.9.30. 본 민원은 구의회로 접수된 주민청원사안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로 제출하여야 하며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원심사규칙」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사안을 심의한 후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련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. 라는 담당부서 의견이 있었고, 본 청원을 마포구의회 한일용, 유효렬 의원의 소개로 2015. 10. 8. 우리 구의회에 접수하여 청원 안건으로 제출된 것임.
- 현재 청원 대상지역의 행정구역을 보면 현재 성산1동은 면적 0.8km²/ 인구 20,941명이며 서교동은 면적 1.65km²/ 인구 27,247명으로 마포구에서 성산1동은 면적이 작은 동(洞)으로, 서교동은 인구가 많은 동(洞)으로 행정구역이 구성되어 있으며, 만일 이번 청원 대상지역이 서교동으로 변경되면 성산1동은 면적 0.754km²/ 인구 20,318명이 되고 서교동은 면적 1.696km²/ 인구

27,870명으로 변경되어, 성산1동은 면적이 더 줄어들고 서교동은 인구가 더 증가하게 되어 동(洞) 행정구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 됨

- 최근 행정구역 변경 사유를 보면 주로 재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변경하고 있으나 최근 대형 건축물이나 업무용 빌딩 등 신축에 따른 개인적인 사유로 경계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하기도 하나, 행정구역 변경 시에는 토지대장, 등기권리 등 약 75종에 따르는 공적공부 정리와 이에 따르는 개인들의 사적 계약 및 재산권 권리 행사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행정구역 경계변경은 해당 경계구역 변경 신청 지역의 주민 의견과 해당 지역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고, 동(洞)주민센터 운영에 필요한 적정면적, 인구수 및 민원발급양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검토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
- 지금의 행정구역은 처음에 하천 등을 중심으로 면적과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졌으나 이후 도로가 개설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행정구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어 수시로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고 있으나,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의 의견과 지리적 여건, 지역개발 및 현 지역의 역사적 전통성 및 행정구역 면적이나 인구수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행정여건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며, 또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청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“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”으로 의견을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여 본 청원을 마포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함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의견서 따로 붙임

(별 첨)

의 건 서

□ 청 원 명 : 마포구 성산동 635~649번지 일대, 행정구역 경계변경

(서교동으로)에 대한 청원

□ 처리하여야 할 기관 : 마포구

□ 채택 의견

○ 본 청원은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635~649번지 일대를 하나의 행정구역(서교동)으로 변경해줄 것을 바라는 내용으로,

○ 청원인들이 행정상의 불편함, 위생문제, 지역주민 화합 저해 등의 문제가 있어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.

○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의 의견과 지리적 요건, 행정구역 면적이나 인구 수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행정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장기계획이 필요하며,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청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“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”으로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 마포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이송하기로 결정함.

청 원 요 지 서

접 수 년 월 일	2015.10.08.	접 수 번 호	3
청 원 인	이미션 외 241명 (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0길 31-7, 2층)		
소 개 의 원	유호렬, 한일용	소 관 위 원 회	행정건설위원회
건 명	마포구 「성산동 635~649번지 일대, 행정구역 경계변경(서교동으로)」에 관한 청원		

〈 요 지 〉

마포구 성산동 635~649번지(약 80여 필지) 일대는 100여 세대 3,0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나, 2개의 행정동이 혼재되어 있어 행정상의 불편함, 쓰레기 수거 시기 상이에 따른 위생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, 동일 지역 내 다른 학군 등 지역 주민의 화합과 단합이 저해 되는바, 상기 지역의 행정구역을 서교동으로 변경해 줄 것을 청원함.